

교직과정 운영규정(3-5-1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직과목의 개설) ① 교직과목은 제2학년부터 제4학년까지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교직과정은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으로 한다.

③ 삭 제(개정 97. 5. 7)

제3조(교원자격과 교직과정 이수) 교직과정이 설치된 각 학부(과) 학생으로서 졸업 후 소정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본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(개정 2000. 11. 29)

제4조(교원양성위원회) ①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및 교원자격검정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(구 교직과정운영위원회)를 둔다.(개정 '10. 11.1)

② 교원양성위원회는 교무부총장, 교학처장, 교직부장, 교직주임교수, 학사운영팀장, 교직설치학부(과)장, 외부인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, 심의내용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수시로 협의한다.(개정 '04. 8. 11., '10.11.1., '16.9.1.)

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(신설 '10.11.1)

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신설 '10.11.1)

⑤ 교원양성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·의결, 교원자격 무시시험검정 실시,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시험검정 합격기준 등을 결정하며 그 밖의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.(신설 '10.11.1)

제5조(수강구분) ① 교직과목의 수강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수강과 교직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하는 자의 수강으로 한다.(개정 '10.11.1)

②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14학점, 교직소양 4학점, 교육실습 4학점(학교현장실습 2학점, 교육봉사활동 2학점)이며, 교과교육영역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으로 한다.(신설 '10.11.1)

제6조(이수예정자의 선발 및 명부 제출)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초 30일 이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학부(과)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학부(과)는 교직과정 신청자 중 인성, 적성을 고려하여 성적순에 따라 해당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인원의 범

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'97. 5. 7)(개정 2000. 11. 29)(개정 2010.11.1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·비치하고 교직과목 담당 교수에게 이를 통보하며 담당교수는 학생에게 그 명단을 회람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00. 11. 29)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(신설 '97. 5. 7), (개정 '10.11.1)

제7조(수강신청 및 학점인정) ① 교직과목은 학칙 제37조 및 시행세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시 소정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한다.

제8조(이수예정자의 이수학점)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,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),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(개정'10.11.1)

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학업성적은 졸업 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이어야 한다. (개정 '10.11.1)

③ 중등특수교육전공자는 표시과목을 표기하기 위하여 선택 전공 38학점 이상(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,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)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. (신설 2006. 9. 14), (개정 '10.11.1)

제 8조 2 (삭제 2010.11.1)

제 8조의 3(교직 복수전공 이수) ①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교직 이수자, 사범계학과 학생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. (신설 2006. 9. 14)

② 교직 복수전공은 교직과정 설치 학과 또는 사범계학과로 이수를 제한한다. (신설 2006. 9. 14)

③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과목 50학점(기본이수영역과목 21학점이상,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)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, 교육 실습은 주전공에 해당하는 자격증별로 1회에 한해 실시한다.(신설 2006. 9. 14), (개정 2010.11.1)

제9조(교육실습)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육실습 4학점(학교현장실습 2학점, 교육봉사활동 2학점)을 이수하여야 하며,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소정의 실습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(개정 2010.11.1)

② 교육봉사활동의 경우 졸업 시까지 2학점(60시간)을 이수하여야 하며, 1일 기준 8시간을 인정한다. (신설 2010.11.1)

제10조(무시험 검정의 구비서류)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각 1통씩 소정의 기일 내에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

다.(개정 2000. 11. 29)

1.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(개정 2000. 11. 29)
2. 삭 제
3. 삭 제
4.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(개정 2000. 11. 29)

제10조의 1 (교원자격증 발급) 교무처에서는 교사자격 발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, 발급자 명단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협조사항) 교무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직과목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1. 교직과목 개설 및 변경
2. 교직과목 이수예정자 선발 및 명부 제출에 관한 사항
3.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
4.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2조 (편입학생의 이수인정) ① 전적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직과목 4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미선발인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과정 이수를 허가할 수 있다.

(신설 2006. 9. 14)

② 3학년으로 복학·편입학·재입학한 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할 수 없다. 단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간호학과(RN-BSN)과정(편입생과정)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직과정 이수 정원이 승인 (RN-BSN과정 정원의 10%)된 경우
2. 다른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,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
3.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한 경우
4. 기타 교원자격검정령이 정하는 경우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교육과정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1997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개정 규정의 적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